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7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및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신설 등	2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7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8.
- (3) 회 부 일 : 2025.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및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화장품경쟁력강화협회의의 협의·조정을 거쳐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2조의4 신설).
-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경쟁력강화협회의의 협의·조정을 거쳐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

현행	개정안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조의5(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①</u> <u>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u> <u>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u>2.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u> <u>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④ 협의회는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u>

현행	개정안
	<u>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u> <u>2. 화장품과 관련하여 학계·연구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u> <u>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u>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1. 화장품 안전·품질 분과위원회</u> <u>2. 화장품 산업 육성 분과위원회</u> <u>3. 화장품 수출 지원 분과위원회</u> <u>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우리 화장품 산업은 2024년 기준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바¹⁾, 이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화장품 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12개에 달하며, 각 부처는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산업 지원이나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에 연관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²⁾, 화장품 분야와 관련된 보다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화장품 산업 관련 부처별 소관 업무 현황 >

구분	부처명	업무 영역	주요 사업
1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화장품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개정, ▲화장품 관련 단체·법인 관리, ▲화장품 안전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운영,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활동 등
2	보건복지부	▲화장품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 ▲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화장품 연구개발 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해외 물류기지 구축 등
3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 등	▲K-뷰티 전용 펀드 조성, ▲K-전략품목 수출바우처 지급,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1) 화장품 산업 수출 성과와 글로벌 위상은 p.14를 참조.

2) 2025. 11. 27. 제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한바 있으며,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이 논의되었음.

구분	부처명	업무 영역	주요 사업
4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등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5	산업통상부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대책 수립·추진,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소비재 수출 바우처 지급,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결제 대생 솔루션 지원 등
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 등	지역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운영 등
7	문화체육 관광부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 등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한류 연관 산업 홍보관 운 영 등
8	외교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등	재외공관 수출·수주 전진기지 화 추진
9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등	-
10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	-
11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온라인 위조상품 감시 등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등
12	관세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칙수사업무 기획·지도 및 조정, ▲수출입 동향관리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5년마다 소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여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적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화장품 관련 정책을 상시적으로 종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정책 수단을 연계하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³⁾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동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및 ‘화장품경쟁력 강화협의회’와 그 성격과 기능이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 및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교 >

구 분	개 정 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⁴⁾ (의안번호 2215798)
계획 수립	○ <u>국무총리</u>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u>화장품관리 기본계획</u> 수립(5년 주기) - 기본계획 포함 사항: 1.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	○ <u>보건복지부장관</u>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u>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u> 수립(5년 주기) - 종합계획 포함 사항: 1.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3) 의안번호 2215798,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025.12.31.)

구 분	개 정 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 (의안번호 2215798)
	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목표와 추진방향 2.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화장품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계획 및 연구·개발 4.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5. 화장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6.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계획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 강화협의회 설치 ○ 의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의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화장품과 관련하여 학계·연구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5인 이내로 구성 ○ 간사: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2명)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위원장, 당연직 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화장품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인 이내로 구성 ○ 간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개정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동 제정안은 6개 장, 38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과적인 화장품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품질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처 간 업무를 종합·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화장품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화장품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관계 부처 간 소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종합·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중심의 추진체계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방송미디어
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반면 보건복지부는, 「화장품법」이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제조·판매·영업 제한 등 규제 중심의 법체계이므로,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등 규제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화장품법」에 규정하는 것은 규제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보건복지부는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범위가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원료·부자재·유통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은 규제법 내에서 다루기보다는 별도 법률 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약사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규제법과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는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⁶⁾.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언론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의료기기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4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를 두도록(제5조)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약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3조의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제4조)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제6조) 규정하고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관 소통·지원체계를 보강하고 화장품 관련 부처별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같이 규제 중심의 「화장품법」에서 부처별 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 중립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수립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체에 관한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중립성 및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안전관리·제조·판매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에 화장품산업 육성·경쟁력 강화·수출 지원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기본계획 및 협의회 근거를 두는 것은 규제기관의 역할과 산업진흥 기능을 혼재시켜 규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 「화장품법」상 산업 지원 관련 규정은 포괄적·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수출 관련 규정도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체계는 규제법 내에 편입하기보다 별도의 진흥법 체계에서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함. 의약품·의료기기·식품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산업 육성 관련 업무는 소관 부처(보건복지부 및 농식품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에서 수행하는 화장품 안전·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하므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를 신설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

【참고】	화장품 산업 수출 성과와 글로벌 위상⁷⁾
-------------	--

□ 국가별 화장품 시장규모 : 한국 130억 달러, 세계 9위 ('23년 기준)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브라질 ... (8위) 프랑스, (9위) 한국, (10위) 멕시코

□ 글로벌 화장품 수출국가 순위 : 한국 102억 달러, 3위

순위	1	2	3	4	비고
국가					'24년 기준
실적	233억 \$	112억 \$	102억 \$	91억 \$	

□ 중소기업 수출품목 순위 : 화장품 '23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연속 1위

순위	1	2	3	4	5	6	7	비고
품목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합성수지	반도체	'25년 상반기

* 화장품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 '23년 62.6% (53억 \$) → '24년 **66.4%** (68억 \$)

□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 한국 18억 달러, 1위

순위	1	2	3	4	5	비고
국가						'24년 기준
실적	18억 \$	13억 \$	10억 \$	9억 \$	7억 \$	

□ 품질관리 수준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6번째 정회원국 ('20.12)

→ 화장품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 국제적으로 인정

7) 출처: '세계가 선택한 한국의 아름다움, 'K-뷰티'를 '글로벌 뷰티'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5.11.27.)